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263

발의연월일: 2022. 1. 4.

발 의 자:이만희·권성동·김석기

김선교 · 김정재 · 김형동

김희국 · 안병길 · 엄태영

유의동 • 이명수 • 이종성

태영호 · 한무경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·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발생 시 역학조사 및 방제 등에 필요한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.

농가에서 재배한 사과,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· 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·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도록 하고, 종자업 등록 시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며,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,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등).

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·보관하여 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(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포함되어야 한다.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9조의3(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·보관 등) ① 종자의 품질관리 및 특정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(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"종자판매자"라 한다)는 종자의생산 또는 판매 이력(이하 "종자이력"이라 한다)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는 자가 기록·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종자의 생산·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(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)의 출처
 - 2. 종자의 생산장소

-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판매하는 자가 기록·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(종자를 생산, 가공,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.
- 1. 종자 구매자의 이름, 주소 및 연락처
- 2.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
-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 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·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이력의 기록·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·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- 제39조의4(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이력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

부렁으로 정한다.

- 제39조의5(종자이력 관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제56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의2. 제3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
 - 2의3.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
- 2의4.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과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 - ②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9조의3제3항·제56조제2호의3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7조(종자업의 등록 등) ① 종 제37조(종자업의 등록 등) ① ---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 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 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 록·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(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 산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가 포함되어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39조의3(종자의 생산 또는 판 매 이력의 기록·보관 등) ① 종 자의 품질관리 및 특정 병해충 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 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 는 자(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"종자판매자"라 한다)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(이하 "종 자이력"이라 한다)을 기록하여

보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 하는 자가 기록·보관하여야 하 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
- 1. 종자의 생산·증식을 위하여
 사용한 종자(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)의 출처
- 2. 종자의 생산장소
-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판매하는 자가 기록·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(종자를 생산, 가공,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종자 구매자의 이름, 주소및 연락처
- 2.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
- 3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
<신 설>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·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이력의 기록·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·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4(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이력관리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신 설>

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56조(과태료) ① ------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.

1. • 2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제39조의5(종자이력 관리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자이 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 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39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 록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한 자

2의3.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 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 록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

<신 설>

3. ~ 5. (생 략) <신 설>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 다.

- 2의4.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방해한 자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·보관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록한 종자판매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

----.